

내용 업데이트 : 2020.02.05.

신한대학교 학사매뉴얼

제1장 학적변동	1
제1절 휴학	1
제2절 복학	8
제3절 자퇴	10
제4절 제적	12
제5절 재입학	14
제2장 전공선택	18
제1절 부전공 및 복수전공	18
제2절 다전공	24
제3절 전공배정	27
제4절 트랙배정	29
제5절 전과	32
제3장 졸업	37
제1절 졸업심사기준	37
제2절 졸업인증제	45
제3절 조기졸업	48
제4절 학위유예	49
제4장 수업	52
제1절 수강신청	52
제2절 계절학기	55
제3절 학점이수표	56
제4절 전자출결	57
제5장 성적	59
제1절 성적평가	59
제2절 성적정정	63
제3절 학사경고	63
제6장 교직	65
제1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65
제2절 교육봉사활동	67
제3절 교원자격증	68
제7장 증명서	71
제1절 증명서 발급	71
제2절 학적부 기재사항정정	73
부록	75



제 1 장

학적변동



제1장 학적변동

제1절 휴 학

휴학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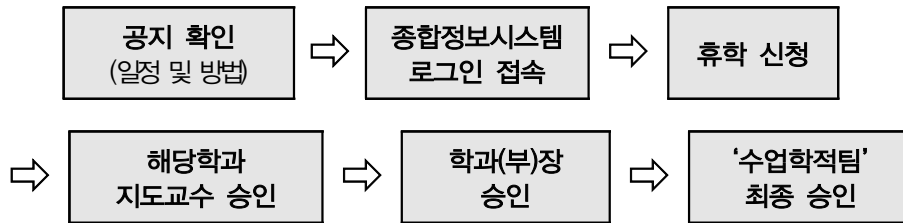
- 일반휴학 : 1학기(6개월) 단위로 일반휴학이 처리되며, 최대 6학기(3년)까지 신청 가능
- 군휴학 : 의무 군복무기간으로 군휴학이 처리되며, 휴학신청 학기에 맞는 복학예정학기 지정
- 육아휴학 : 1학기(6개월) 단위로 육아휴학이 처리되며, 최대 4학기(2년)까지 신청 가능

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군휴학	개강일 3/4 이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수시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 홈페이지 신청가능	복학 후 납부한 등록금 대체가능
	개강일 3/4 이후 입대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출석 및 성적 인정가능
육아휴학		개강일 3/4 이전	휴학원서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휴학원서 의료기관 진단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치료기간 4주 이상으로써 “학업수행이 어렵다” 는 내용 포함된 경우에 한함
일반 휴학	개강 전	별도 공지	※ 홈페이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이후 휴학신청 시 학과방문하여 휴학신청
	개강 후	학기말고사 이전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휴학소견서 ※ 학과 방문 후 신청	개강 후 10일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차감 없음 ※ 휴학 중 자퇴시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등록금 차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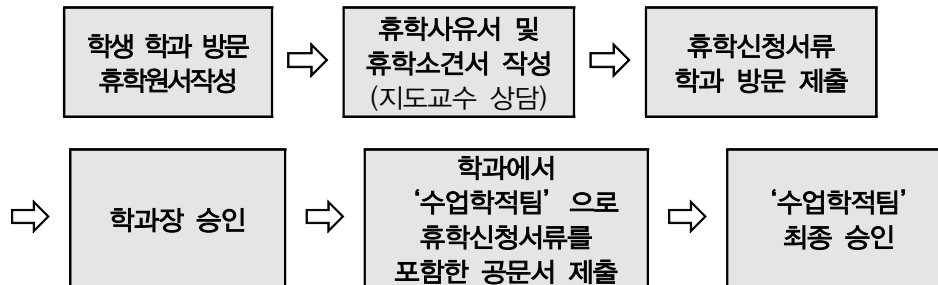
휴학 신청 절차

● 휴학신청기간 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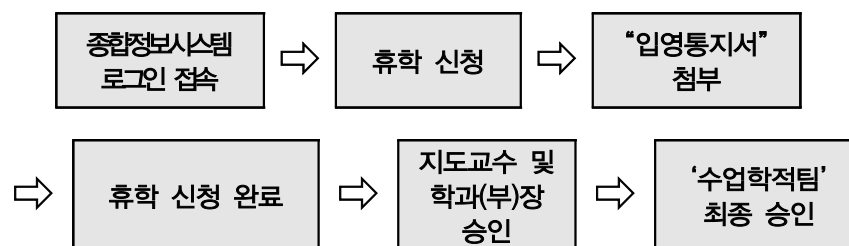


※ 연속 2회 초과, 연속 3회 차 이상 일반휴학생은 반드시 학과를 방문하여 추가서류(휴학원서, 휴학사유서, 휴학소견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휴학신청기간 외 신청



● 군휴학 신청



※ 휴학신청기간 외에도 입영통지서 발급된 후부터는 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신입생은 질병, 병역, 임신, 출산 및 육아 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휴학생의 성적처리

종류		성적처리
일반휴학		학기 성적 인정 불가
군휴학	개강일 3/4 이전 입대	학기 성적 인정 불가
	개강일 3/4 이후 ~ 기말고사 전 입대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취득과목이 60점 이상에 한하여 인정

※ 단, 기말고사 종료 후 입대자는 반드시 기말고사 응시해야함
 ※ “군입영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복학생의 등록금 추가납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 개강일 전, 휴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
- 휴학신청기간이 지난 후, 개강일 전까지 학과를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학기 개강일로부터 10일 이내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 등록금 고지서 발급여부를 확인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 전까지 학과를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복학할 때 등록금 대체 가능(단, 정규학기 초과자는 제외) 단, 직전학기 학적상태가 “재학” 인 학생에 한함
- 학기 중 휴학생의 경우 복학학기 추가납부 기준

개강일 기준 휴학신청일	복학시 추가 등록금 납부금액
개강일로부터 11일 ~ 30일 이내	등록금의 1/6 해당액 추가 납부
개강일로부터 31일 ~ 60일 이내	등록금의 1/3 해당액 추가 납부
개강일로부터 61일 ~ 90일 이내	등록금의 1/2 해당액 추가 납부
개강일로부터 91일 이후	등록금 전액 추가 납부

- ※ 재학한 기준 기간에 따라 휴학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의 등록금이 차감되고, **차감된 금액의 잔액은 복학공제금으로 유지됨**
- ※ 복학공제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복학시 최종 납부 등록금 : **복학공제금 + 차감된 등록금(추가 납부해야하는 등록금)**

휴학 신청 후 확인사항

- 휴학신청 완료 후 복학예정학년도와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사관리에 유의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될 수 있음
- 학기 중 휴학(연장휴학 포함)시에 등록금을 완납해야만 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학신청 기간 및 개강일 이전에 휴학 신청해야함을 유의
-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연장휴학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과에 제출하여 휴학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휴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 사무실에 문의

휴 학 원 서

학 과 (부)			학 번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보호자연락처		
휴 학 구 분	☐ 일반휴학	☐ 군 휴학	등 록 금 납 부	☐ 등록	☐ 미등록
휴 학 사 유	☐ 가정사정	☐ 전공적성	☐ 군입대	☐ 어학연수	☐ 경제적문제
	☐ 수능준비	☐ 병가(질병)	☐ 자격증준비	☐ 기타(사유:)	
휴 학 학 기	20 학년도	학기	복학예정학기	20 학년도	학기
일반휴학 기본단위 : 1학기(6개월)			1년 휴학 희망시 1학기 후 연장휴학신청		
상 담 내 용	지도교수 지도교수 (인) ※ 지도교수가 상담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보 호 자 : (인)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휴 학 사 유 서

학 과 (부)		학 번	
성 명		휴 학 구 분	☐ 일반휴학 ☐ 군휴학
휴 학 학 기	학년도 학기	복학예정학기	학년도 학기
일반휴학 기본단위 : 1학기(6개월)		예시 : 1년 휴학 희망시 1학기 후 연장휴학신청	

☐ 휴학 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니 선처바랍니다.

20 . . .

학 생 (서명)

학 부 모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휴 학 소 견 서

학 과 (부)		학 번	
성 명		휴 학 구 분	☐ 일반휴학 ☐ 군휴학
휴 학 학 기	학년도 학기	복학예정학기	학년도 학기
일반휴학 기본단위 : 1학기(6개월)		예시 : 1년 휴학 희망시 1학기 후 연장휴학신청	

☐ 지도교수 소견

20 . . .

학 과 (부)명

지 도 교 수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지도교수	학과(부)장

학 과		학 년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학 번				연 락 처	
성 명				입 영 일 자	년 월 일
관 련 근 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휴학자 성적처리) ①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교과목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한 후 군입대 휴학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학한 학생이 학기말 시험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성적 인정 교과목 내역]

연번	교과구분	교과목번호-분반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확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성 적 인 정 신 청 절 차	◎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신청서(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비치) 작성 → 수강신청과목확인 → 담당교수 이수인정여부 확인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4선 후인 학생 중 성적부여를 원하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시 성적인정란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함

위 신청인은 ()학년도 제()학기 총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하게 된 학생으로서, 당해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휴학 전에 당해학기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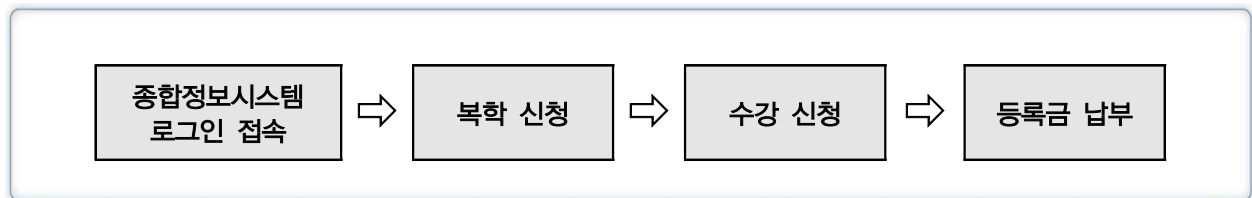
성 명 : (인)

제2절 복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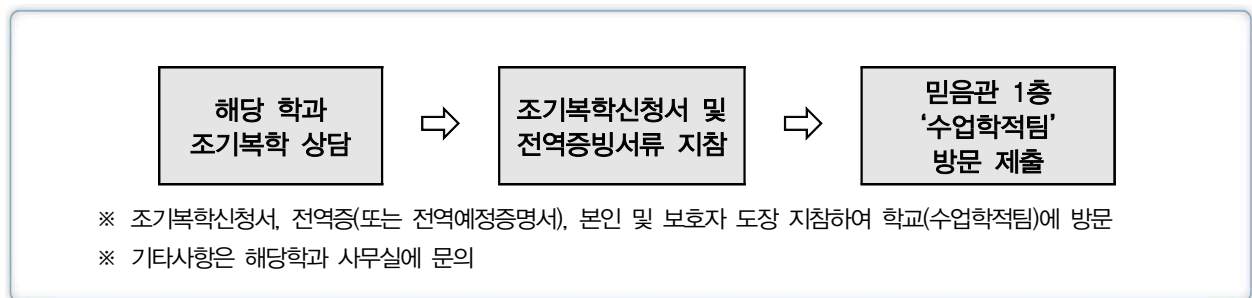
복학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일반복학	별도 공지	복학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 시 학과를 방문하여 복학신청
조기복학 (군휴학생에 한함)	전역일이 개강 후 3주 이내	조기복학신청서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 학교 방문 신청	단, 조기복학으로 학기불일치 발생의 경우 교육과정 및 졸업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일반복학 신청방법



조기복학 : 학교 방문 신청



● 개강일 기준 3주 이후 전역하는 학생의 제출 서류

- 조기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증
- 개강일 기준 3주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수업 출석이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 한하며, 이 경우라도 반드시 조기복학을 신청해야함

복 학 신 청 서

학 과 (부)				학 번			
이 름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보 호 자 연 락 처			
학 적 상 태	☐ 일반휴학	☐ 군 휴학	등 록 금 납 부	☐ 등록	☐ 미등록		
휴 학 학 기	20 학년도 학기		복 학 예 정 학 기	20 학년도 학기			
복 학 신 청 학 기	20 학년도 학기						
휴 학 사 유	☐ 가정사정	☐ 전공적성	☐ 군입대	☐ 어학연수	☐ 경제적문제	☐ 직장문제	
	☐ 수능준비	☐ 병가(질병)	☐ 자격증준비	☐ 기타(사유:)			
복 학 사 유							

신한대학교 「학칙」 제28조(복학)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만에 일

학 생 : (인)

보 호 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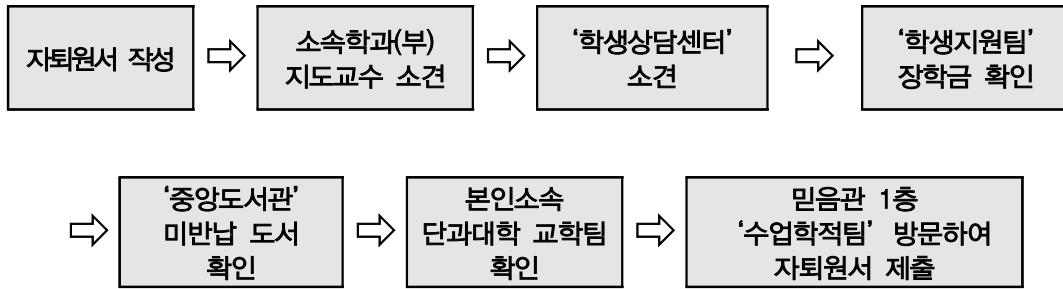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1. 복학신청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조기 복학생은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을 첨부합니다.
3. 예비군 대상자는 예비군대대본부에 신고를 합니다.

제3절 자 퇴

- 자퇴 :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자퇴 신청 절차



※ 등록금반환대상 학생은 서류제출 후 20일 전·후로 통장에 자동 입금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는 경우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개강일 기준 자퇴원서 접수일	등록금 반환금액
개강일로부터 1일 ~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개강일로부터 31일 ~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개강일로부터 61일 ~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개강일로부터 91일 이후	반환금 없음

자 퇴 원 서

담당자 확인

자 퇴 절 차	학과사무실 방문 → 지도교수 면담 및 지도교수의 보호자 유선상담 → 단과대학 교학팀 담당자 확인
	→ 행함관(호림관) 1층 학생상담센터 상담 및 소견 → 행함관(호림관) 1층 학생지원팀 장학금 확인
	→ 도서관 도서대출내역 확인 → 민음관(본관) 1층 수업학적팀 제출

학 과	학 년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학 번			학 적 상 태	☐ 재 학 / ☐ 휴 학		
성 명			휴학시작학기 (휴학 중 자퇴)	학년도 학기		
연 락 처	본 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E-mail			
주 소						
자 퇴 사 유 (○) 표기	① 타대학 입학 () [대학(교) 학과]	보호자 상담 및 지도교수 면담	소 견			
	② 재수(수능)준비 () ③ 전공적성문제 () ④ 해외유학 () ⑤ 취업 () ⑥ 가정사정 () ⑦ 건강상문제 () ⑧ 기타사항 : 구체적으로 ()		보호자 상담 및 지도교수 확인 (인)			
복수선택 가능	※ 사유기재란 부족시 별도(A4) 기재	상담센터 소견 및 상담	소 견			
			상 담 원 (인)			

신한대학교 「학칙」 제29조(자퇴)에 의하여 상기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등 록 금 환 불 (계좌이체)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학생과의 관계	

교학팀 확인	도서관 확인	장학금 확인	장학금 반환내역 (특이사항)	접수일	년	월	일
				입력일	년	월	일

제4절 제 적

-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 요건

미등록 제적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휴학연한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이중학적 제적	타 대학에 신입 또는 편입한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사경고 제적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징계 제적	학칙 등의 위반으로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제적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학사경고 제적

-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되며 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사전에 인재개발처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학사경고 제적 제외 가능

미등록 제적

- 제적사유

- 등록대상자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

- 미등록 제적 절차

- 소정의 등록기간이 완료된 후 휴학생 명단과 등록자 명단을 확인하여 미등록 학생 파악
- 미등록 학생에게 해당학과에서 연락 및 확인에 따라 추가 납부 접수
- 미등록 학생을 확정하여 제적 처리한 후, 해당 학생에게 미등록 제적통지서를 송부하고, 소속 단과 대학 및 학과에 명단 통보

미복학 제적

● 제적사유

- 소정의 복학기간 내에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

● 미복학 제적 절차

- 소정의 복학기간이 완료되어 학기 개강 3주 후, 해당학기 복학예정 휴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미복학 생 파악
- 미복학 학생에게 해당학과에서 연락 및 확인에 따라 추가 학적변동 신청 접수
- 미복학 학생을 확정하여 제적 처리한 후, 해당 학생에게 미복학 제적통지서를 송부하고, 소속 단과 대학 및 학과에 명단 통보
 - ※ 단, 미복학 제적통지서 발송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SMS 전 송으로도 제적 통보 가능

제5절 재입학

-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학생으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당해학년도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학할 허가하는 제도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본교에 1학기 이상 이수하였던 학생으로 자퇴 및 제적된 학생

- 자퇴 : 제적학기로부터 2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
- 제적 : 제적학기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
※ 제적 종류에 따라 재입학 신청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초과학생,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학생,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자는 재입학 불가
- 학과(부)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심사 후 허가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

-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에서 해당 학년도에 제1학년 및 제2학년의 정원내 제적생에 따른 여석 수만큼 재입학 모집 가능
- 재입학 여석산정 기준은 편입학 여석산정 기준에 따라 정함

일정 공고 및 신청시기

구분	3월 재입학	9월 재입학
일정공고	전년도 9월 말	4월 말
신청시기	전년도 10월 초	5월 초

※ 자세한 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재입학 사정기준 및 학사운영

- 재입학 사정기준

- 재입학 희망학생이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
①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② 연장자
- 자퇴 또는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의 동일학년에 재입학을 원칙
※ 제적 전에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모두 인정 가능

● 재입학 학사운영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이라도 이를 취소 가능
- 제적된 시기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장학금 조정 가능
- 재입학 후 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 해당 신 교육과정을 적용

재입학 유의사항

- 재입학 후 당해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재입학 후 첫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 재입학은 1회에 한함
- 제적 이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입학 승인 시 재입학 학과를 명시하고 학적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재입학에 합격한 후, 포기했을 경우에도 추후 재입학 불가능
- 재입학 합격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 계절학기 수강 불가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 기준 초과 불가
-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 기준 초과 불가

재 입 학 신 청 서

학 과 (부)			학 번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제 적 학 기	학년도		학기	제 적 유 형	☐ 자퇴 ☐ 제적
제 적 사 유	☐ 타대학입학	☐ 재수준비	☐ 전공적성	☐ 해외유학	☐ 취업(직장)
	☐ 가정사정	☐ 질병(건강)	☐ 미복학제적	☐ 미등록제적	☐ 학사경고제적
재 입 학 신 청 학 기	학년도		학기	취 득 학 점	학점
지 도 교 수 상 담 내 용 (제적당시 지도교수)	※ 지도교수가 상담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서명)				

상기 본인은 재입학함에 있어 신한대학교 「학칙」 및
「재입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학 생 (서명)

보 호 자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제 2 장

전공선택



제2장 전공선택

제1절 부전공 및 복수전공

- 부 전 공 : 주전공 이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21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 복수전공 : 주전공 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36학점)과 졸업 요건(전공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졸업논문 등)을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의 학위명과 다전공의 학위명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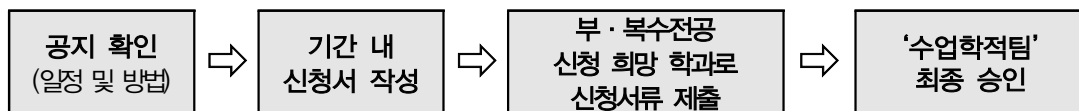
신청자격

- 주전공 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수료(수료예정자 포함)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수전공은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201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는 다전공 제도 시행에 의한 운영
- 부전공은 2학기 이상 수료(예정)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허용범위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의 다전공은 허용하지 않음
- 각 학과(부)별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인원은 입학정원의 20% 내외로 하며, 특정학부의 전공 또는 학과에 집중적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 가능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이수 신청 가능

신청절차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기간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주전공 학과 졸업 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학점을 이수하지 못 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 학과(부)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음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생은 교양 및 주전공 교과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해야함
- 부전공의 경우 동일교과목은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 가능.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으로 산입하지 않음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주전공의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 단,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로 인정 가능
- 전과한 학생 및 편입생이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과의 학점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별도로 심의를 거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편입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가 편입 전 전적대학의 학과(부)와 동일(유사)학과(부)일 경우 전적 대학성적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사정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생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학위를 수여함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한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졸업증명서 등 기타 증명서에 표기함. 단, 이수한 전공에 대하여 별도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음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포기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말 까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에 제출해야함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수여

- 복수전공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이수하여야 할 학점 외에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부전공 이수학생에게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주전공 학과와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함
-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주전공 학과의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과의 학위명을 함께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함

실험실습비 납부

-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과가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는 학과일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해야 함

부전공 · 복수전공신청서

학 과(부)		전 공 구 분	☐ 부전공 ☐ 복수전공
신 청 학 과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 신청 이유 및 학업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현 재 소 속 학 과 (부) 동 의 서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① 부 전 공 학 과 (부) 동 의 서 ☐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② 복 수 전 공 학 과 (부) 동 의 서 ☐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학사행정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수집됩니다.			
나.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우리 대학의 행정업무에 사용 및 교내 홈페이지의 공공 게시판에 게시되는 일련의 작업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제3의 기관 및 단체들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한대학교 「학칙」 제48조(부전공) 및 제49조(복수전공),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얻어 부전공·복수전공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불 임 서 류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1부		

- 부전공 이수학점은 21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복수전공은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수전공은 2017학번까지 신청 가능하며, 2018학번부터는 다전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 공 포 기 신 청 서

주 전 공		포 기 전 공	
학 번		포기전공구분	☐ 부전공 ☐ 복수전공
성 명		신 청 학 기	학년도 학기

☐ 포기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현 재 소 속 학 과 (부) 동 의 서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포 기 전 공 학 과 (부) 동 의 서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학사행정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수집됩니다.
 나.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우리 대학의 행정업무에 사용 및 교내 홈페이지의 공공 게시판에 게시되는 일련의 작업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제3의 기관 및 단체들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전공 이수포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얻어 전공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포기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타학과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전 공 인 정 신 청 서

주 전 공	학과(부) (전공)	학 번	
성 명	(한글)	학 년	학년
연 락 처		신 청 당 시 학 기	학년도 학기
구 분 전 공	전 공 명	취 득 학 점	당 해 학 기 전 공 수 강 신 청 학 점
제 1 전 공 (주 전 공)	학과(부) 전공	학 점	학점
제 2 전 공	학과(부) 전공	학 점	학점
제 3 전 공	학과(부) 전공	학 점	학점
복 수 전 공	학과(부) 전공	학 점	학점
부 전 공	학과(부) 전공	학 점	학점

상기와 같이 전공을 인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붙임 : [별지 제10호 서식] 전공 인정교과목 현황 1부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제2절 다전공

- 다전공 : 주전공 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36학점)과 졸업 요건(전공기초·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졸업논문 등)을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의 학위명과 다전공의 학위명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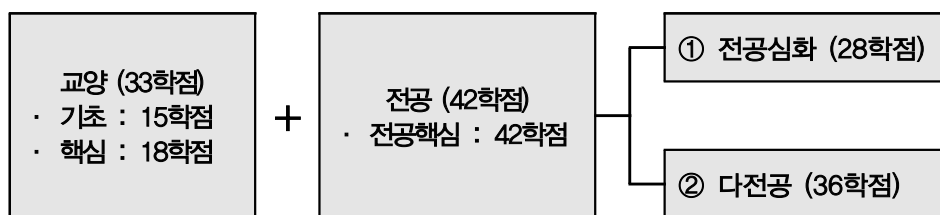
- 다전공의 신청은 3학기 이상 6학기 이내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이 다전공으로 변경되어 신청 가능
 - ※ 다만, 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신청할 수 없음

허용범위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의 다전공은 허용하지 않음
- 각 학과(부)별 다전공 인원은 입학정원의 20% 내외로 하며, 특정학부의 전공 또는 학과에 집중적으로 다전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 가능
- 주전공과 별도로 최대 2개 전공을 신청 가능하나, 이미 2개의 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추가적으로 다전공 등을 신청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전공을 포기하고 신청해야함

다전공 이수

- 2018학년도 입학생 최소 이수학점 기준



- 주전공과 다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6학점까지 중복 이수가 가능하나, 졸업학점에는 이중으로 산입하지 않음
- 다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주전공 심화 유형의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
- 다전공을 신청한 후 이를 이수하지 못하고 부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로 인정
- 다전공을 포기할 경우 전공심화의 이수기준을 충족해야만 졸업 가능
- 다전공 이수학생은 교양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해야함

다전공 학위수여

- 다전공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이수하여야 할 학점 외에 주전공 및 다전공 학과(부)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다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주전공 학과의 학위명과 다전공 학과의 학위명을 함께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함

다 전 공 신 청 서

학 과(부)		학 년	
다 전 공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 신청 이유 및 학업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현 재 소 속 학 과 (부) 동 의 서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① 다 전 공 학 과 (부) 동 의 서 ☐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② 다 전 공 학 과 (부) 동 의 서 ☐

학과(전공), 학과(부)장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학사행정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수집됩니다.
 나.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우리 대학의 행정업무에 사용 및 교내 홈페이지의 공공 게시판에 게시되는 일련의 작업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제3의 기관 및 단체들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다전공 등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얻어 다전공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불 임 서 류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1부.

- 다전공은 2018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전공은 2학기 이상 수료(예정) ~ 5학기 이상 수료(예정) 학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3절 전공배정

전공배정

- 동일모집단위(학부)에 입학하여 2학기(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모집단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공을 배정받아야 함

세부전공 운영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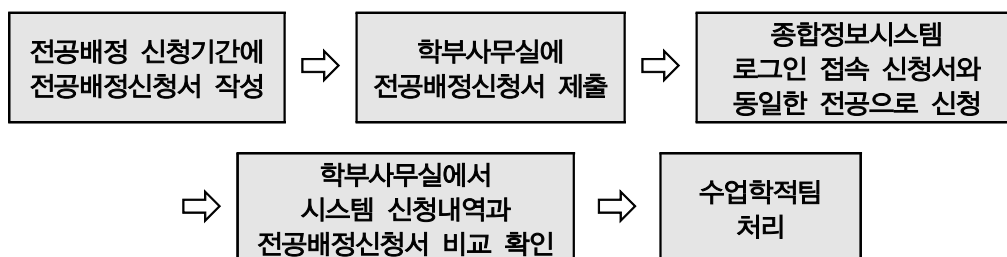
- 식품조리과학부 : 식품영양학전공, 외식조리전공
- IT융합공학부 :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 디자인학부 :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전공배정 기준

-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을 원칙으로 함. 단, 특정 전공에 전공별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2학기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배정
-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의 우선순위
 - ① 1순위 : 총 취득 학점이 많은 학생
 - ② 2순위 : 교양필수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 ③ 3순위 : 교양필수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휴학 후 몇 학기로 복학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학기 불일치 발생 가능 유의

전공배정 신청절차



※ 최초 배정된 전공에서 다른 전공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전과 신청을 통해서 가능

전 공 배 정 신 청 서

학 부	학부	학 번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취 득 학 점	학점
평 점 평 균		전 체 석 차	

☐ 전공신청사유

	제1지망 전공	제2지망 전공	제3지망 전공
희 망 전 공			

상기 본인은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전공배정 신청)에 의하여
전공배정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학 생 : (서명)

붙임 : 성적증명서 1부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제4절 트랙배정

트랙배정

- 동일모집단위(학과)에 입학하여 2학기(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모집단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트랙을 배정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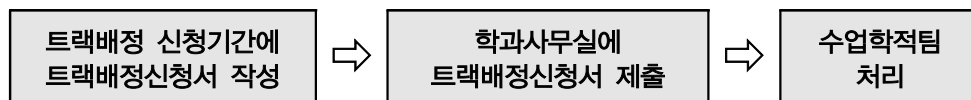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학과

-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 자동차공학트랙, 기계시스템트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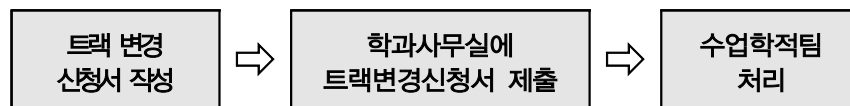
트랙배정 기준

- 본인이 희망하는 트랙으로 배정을 원칙으로 함. 단, 특정 트랙에 트랙별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2학기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배정
-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의 우선순위
 - 1순위 : 총 취득 학점이 많은 학생
 - 2순위 : 교양필수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 3순위 : 교양필수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 휴학 후 첫 학기로 복학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학기 불일치 발생 가능 유의

트랙배정 신청절차



트랙배정 변경절차



※ 단, 트랙 변경 시 변경된 트랙으로 전공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함

- 트랙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제2학년 1학기(3학기) 과정을 마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트랙 변경 신청 가능
- 동일학과 내 다른 트랙으로 변경한 학생이 이전 트랙에서 취득한 전공교과목의 학점은 변경된 트랙 책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또는 일반선택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

트랙배정신청서

학 과	학과	학 번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취 득 학 점	학점
평 점 평 균		전 체 석 차	

☐ 트랙신청사유

	제1지망 트랙	제2지망 트랙	제3지망 트랙
희 망 트 랙			

상기 본인은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트랙배정 신청)에 의하여
트랙배정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학 생 : (서명)

붙임 : 성적증명서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트랙 변경 신청서

학 과	학과	트랙 명 (변경 전)	트랙
성 명	(한글)	학 번	년 월 일
연 락 처		취 득 학 점	학점
평 점 평 균		전 체 석 차	

☐ 트랙변경 신청사유

	제1지망 트랙	제2지망 트랙	제3지망 트랙
변경 트랙			

상기 본인은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트랙 변경)에 의하여
트랙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학 생 :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제5절 전과

- 전과 : 본교 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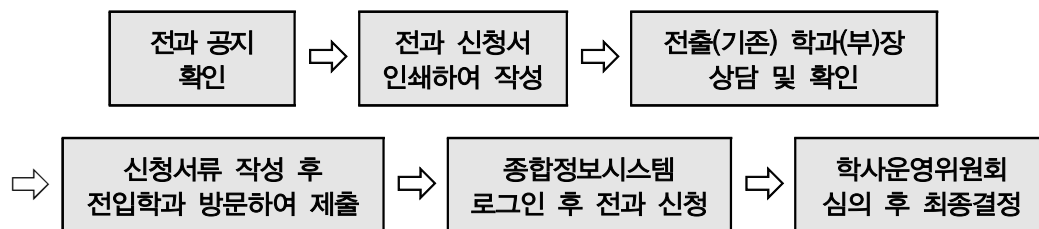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의 1/4 이상을 취득한 2~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전과 허용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과 허용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외국인 학생이 언어 또는 학업의 곤란으로 전과를 신청한 경우 전과 가능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 전과(전입) 지원하는 경우
 - ② 교직과정관련 학과로 전과(전입) 지원하는 경우
 - ③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학과로의 전과 지원하는 경우
 - ④ 편입학생의 경우 (특례편입학생 제외)

신청방법



※ 전과 신청서류 : 전과신청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등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이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따로 이수해야 함
 - ※ 다만,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전입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해당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심의를 통하여 전입학과(전공)의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 가능

전과 등록

- 전과한 학생은 지정된 등록기간에 전입학과에 등록을 해야 함
- 전과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대체 가능
 - ※ 단, 등록계열 변경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학기 등록금 책정액을 기준으로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함
- 제4학년에 전과하여 수업연한 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함

장학금 수혜 제한

- 입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격 상실됨
 - ※ 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격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음
- 전과한 학생의 장학금 수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에 관한 규정」에 따름

전과신청서

소속	학과(부) (전공)	학번	
성명	(한글)	성별	☐ 남 ☐ 여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출학과 (기존학과)		승인여부	☐ 승인 ☐ 불가
전입학과 (신청학과)		승인여부	☐ 승인 ☐ 불가

상기 본인은 「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전과 신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과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학 생 (서명)

전출학과(부)장 (서명)

전입학과(부)장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전과학업계획서

학 과 (부)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전 출 학 과 (기 존 학 과)		전 입 학 과 (신 청 학 과)	

☐ 전과 후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

20 . . .

성 명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제 3 장

졸업



제3장 졸업

- 졸업 :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
- 졸업예정 : 4년(8학기) 등록을 필하고, 7학기까지의 기 취득학점과 8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이 졸업학점(13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예정 인정 가능

제1절 졸업심사기준

졸업 대상

- 8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며, 동시에 졸업학점·졸업논문(학과에 따라 실험실습보고·실기발표·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대체 가능) 심사 합격 및 외국어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상
- 졸업에 필히 이수해야 할 최저 이수학점은 전공 65학점, 교양 29학점(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 70학점, 교양 33학점)으로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간호학과 전공이수학점은 예외로 함)
-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음
- 외국어졸업인증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졸업 요건

- 신한대학교(2014학번 ~ 2017학번) 및 (구)한북대학교의 졸업 요건

구분	신한대학교	(구)한북대학교
졸업학점	130학점	130학점
교양필수 등 학점	기초교양 13학점 + 핵심교양 16학점	10학점 + 채플 2학기 이상 수강
전공 최소이수 학점	65학점	60학점

- 2018학번 이후 신한대학교의 졸업 요건

구분	신한대학교	
졸업학점	130학점	
교양필수 등 학점	기초교양 15학점 + 핵심교양 18학점	
전공 최소이수 학점	심화전공	42학점 + 28학점 = 70학점
	다전공	42학점 + 36학점 = 78학점
※ 다전공 과정 선택이 불가한 간호학과는 전공학점(전공핵심+전공심화)이 70학점이나, 간호학과와 전공기초·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이 99학점이므로 99학점으로 표기함		

입학 학년도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 전공학점이수

●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입학생 적용

대학	학과(부) · 전공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
				기초 교양	핵심 교양	기초 필수	선택	계	기초 필수	선택	계	
사회 과학 대학	공공행정학과		130	13	16	-	65	65	-	36	36	21
	유아교육과					5	60	65	불가			
	사회복지학과					-	65	65	-	36	36	21
	미디어언론학과					-	65	65	-	36	36	21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65	65	-	36	36	21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65	65	-	36	36	21
	국제어학과					5	60	65	8	28	36	21
바이오 생태보건 대학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	65	65	-	36	36	21
		외식조리전공				-	65	65	-	36	36	21
	임상병리학과					2	63	65	불가			
	방사선학과					-	65	65	불가			
	치기공학과					8	57	65	불가			
	치위생학과					8	57	65	불가			
	뷰티헬스 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	65	65	-	36	36	21
		안경광학전공				9	56	65	불가			
간호대학	간호학과					92	-	92	불가			
과학 기술 융합 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	65	65	-	36	36	21
	I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7	58	65	7	29	36	21
		컴퓨터공학전공				7	58	65	7	29	36	21
	섬유소재공학과					6	59	65	6	30	36	21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9	56	65	9	27	36	21
디자인 예술 대학	공연예술학과					-	65	65	-	36	36	21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6	59	65	6	30	36	21
		패션디자인전공				3	62	65	6	30	36	21
		공간디자인전공				6	59	65	6	30	36	21

※ 위 표의 복수전공, 부전공의 “불가” 는 해당 칸의 학과로 전입할 수 없음을 말하

※ 전공 이수학점은 65학점이나, 간호학과와 전공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이 92학점으로 표기

※ 편입생은 전공 65학점 이상(전공기초 · 전공필수 요건 충족)

● 2017학년도 입학생 적용

대학	학과(부) · 전공		졸업 학점	교양 학점		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	
				기초 교양	핵심 교양	기초 필수	선택	계	기초 필수	선택	계		
사회 과학 대학	공공행정학과		130	13	16	—	65	65	—	36	36	21	
	유아교육과					5	60	65	불가				
	사회복지학과					—	65	65	—	36	36	21	
	미디어언론학과					6	58	65	6	30	36	21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65	65	—	36	36	21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65	65	—	36	36	21	
	국제어학과					8	57	65	8	28	36	21	
바이오 생태보건 대학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	65	65	—	36	36	21	
		외식조리전공				—	65	65	—	36	36	21	
	임상병리학과					2	63	65	불가				
	방사선학과					—	65	65	불가				
	치기공학과					8	57	65	불가				
	치위생학과					8	57	65	불가				
	뷰티헬스 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	65	65	—	36	36	21	
		안경광학전공				9	56	65	불가				
	간호대학	간호학과				92	—	92	불가				
	과학 기술 융합 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3	62	65	3	33	36	21	
I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7	58	65	7	29	36	21	
		컴퓨터공학전공				7	58	65	7	29	36	21	
섬유소재공학과		9				56	65	9	27	36	21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9				56	65	9	27	36	21		
디자인 예술 대학	공연예술학과					—	65	65	—	36	36	21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6	59	65	6	30	36	21	
		패션디자인전공				6	59	65	6	30	36	21	
		공간디자인전공				6	59	65	6	30	36	21	
						6	59	65	6	30	36	21	
※ 위 표의 복수전공, 부전공의 “불가” 는 해당 칸의 학과로 전입할 수 없음을 말함													
※ 전공 이수학점은 65학점이나, 간호학과의 전공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이 92학점으로 표기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요건이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조정된 학과는 미디어언론학과, 국제어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패션디자인전공 등으로 총 4개 학과에 해당함													
※ 편입생은 전공 65학점 이상(전공기초 · 전공필수 요건 충족)													

● 2018학년도 입학생 적용

대학	학과(부) · 전공	졸업 학점	교양학점 ①		주전공만 선택시 학점 (주전공 심화 유형) ②			주전공+다전공 선택시 학점 (다중전공 유형) ②						부전 공 학점 ③		
			기초 교양	핵심 교양	기초 필수	선택	계	주전공			다전공					
								기초 필수	선택	계	기초 필수	선택	계			
사회 과학 대학	공공행정학과	130	15	18	-	70	70	-	42	42	-	36	36	21		
	유아교육과				5	65	70	5	45	50	불가					
	사회복지학과				-	70	70	-	42	42	-	36	36	21		
	미디어언론학과				6	64	70	6	36	42	6	30	36	21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70	70	-	42	42	-	36	36	21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70	70	-	42	42	-	36	36	21		
	국제어학과				8	62	70	8	34	42	8	28	36	21		
바이오생태 보건 대학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	70	70	-	42	42	-	36	36	21	
					외식조리전공	-	70	70	-	42	42	-	36	36	21	
	임상병리학과				2	68	70	2	40	42	불가					
	방사선학과				-	70	70	-	42	42	불가					
	치기공학과				8	62	70	8	34	42	불가					
	치위생학과				9	61	70	9	33	42	불가					
	뷰티헬스 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	70	70	-	42	42	-	36	36	21	
					안경광학전공	9	61	70	9	33	42	불가				
	간호				간호학과	99	-	99	99	-	99	불가				
과학 기술 융합 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6	64	70	6	36	42	6	30	36	21		
	I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7	63	70	7	35	42	7	29	36	21	
					컴퓨터공학전공	7	63	70	7	35	42	7	29	36	21	
	섬유소재공학과				9	61	70	9	33	42	9	27	36	21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9	61	70	9	33	42	9	27	36	21		
디자인예술 대학	공연예술학과				-	70	70	-	42	42	-	36	36	21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6	64	70	6	36	42	6	30	36	21	
					패션디자인전공	6	64	70	6	36	42	6	30	36	21	
					공간디자인전공	6	64	70	6	36	42	6	30	36	21	
○○연계전공					연계전공은 주전공 이수불가			연계전공은 주전공 이수불가			개별연계전공 에 따라 다름		36	21		
○○융합전공					개별융합전공 에 따라 다름			70	개별융합전공 에 따라 다름		42	개별융합전공 에 따라 다름		36	21	

- ※ 위 표의 다전공, 부전공의 “불가”는 해당 간의 학과로 전입할 수 없음을 말함
- ※ 다전공 과정 선택이 불가한 간호학과는 전공학점(전공핵심+전공심화)이 70학점이나, 간호학과의 전공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이 99학점이므로 99학점으로 표기함
- ※ 졸업학점은 ① 교양학점 ② ‘주전공’만 선택시 학점 또는 ‘주전공+다전공’ 선택시 학점 ③ 부전공 학점 합산
- ※ 졸업요건으로 ① 교양학점 ② ‘주전공’만 선택시 학점 또는 ‘주전공+다전공’ 선택시 학점 이수해야함
- ※ 편입생은 전공 65학점 이상(전공기초 · 전공필수 요건 충족)
- ※ 편입생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하는 다전공 과정을 신청할 수 없고, 전공심화 과정만 신청 가능

● 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

대학	학과(부) · 전공		졸업 학점	교양학점 ①		주전공만 선택시 학점 (주전공 심화 유형) ②			주전공+다전공 선택시 학점 (다중전공 유형) ②						부전 공 학점 ③			
				기초 교양	핵심 교양	기초 필수	선택	계	주전공			다전공						
									기초 필수	선택	계	기초 필수	선택	계				
사회과학 대학	공공행정학과		130	15	18	-	70	70	-	42	42	-	36	36	21			
	유아교육과					5	65	70	5	45	50	불가						
	사회복지학과					-	70	70	-	42	42	-	36	36	21			
	미디어언론학과					6	64	70	6	36	42	6	30	36	21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70	70	-	42	42	-	36	36	21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70	70	-	42	42	-	36	36	21			
	국제어학과					8	62	70	8	34	42	8	28	36	21			
바이오생태 보건대학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	70	70	-	42	42	-	36	36	21			
		외식조리전공				-	70	70	-	42	42	-	36	36	21			
		바이오식품산업전공				9	61	70	9	33	42	9	27	36	21			
	임상병리학과					2	68	70	2	40	42	불가						
	방사선학과					11	59	70	11	31	42	불가						
	치기공학과					8	62	70	8	34	42	불가						
	치위생학과					9	61	70	9	33	42	불가						
	뷰티헬스 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	70	70	-	42	42	-	36	36	21			
		안경광학전공				9	61	70	9	33	42	불가						
	간호	간호학과							99	-	99	99	-	99	불가			
과학기술 융합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15	55	70	15	27	42	15	21	36	21
	I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7	63	70	7	35	42	7	29	36	21
		컴퓨터공학전공							7	63	70	7	35	42	7	29	36	21
	섬유소재공학과					9	61	70	9	33	42	9	27	36	21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9	61	70	9	33	42	9	27	36	21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9	61	70	9	33	42	9	27	36	21			
디자인 예술대학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	70	70	-	42	42	-	36	36	21			
		태권도교육융합전공				9	61	70	9	33	42	9	27	36	21			
		모델콘텐츠전공				18	52	70	18	24	42	18	18	36	21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6	64	70	6	36	42	6	30	36	21			
		패션디자인전공				9	61	70	6	36	42	9	27	36	21			
		공간디자인전공				6	64	70	6	36	42	6	30	36	21			
○○연계전공					연계전공은 주전공 이수불가			연계전공은 주전공 이수불가			개별연계전공 에 따라 다름			36	21			
○○융합전공					개별융합전공 에 따라 다름			70	개별융합전공 에 따라 다름			42	개별융합전공 에 따라 다름			36	21	
※ 위 표의 다전공, 부전공의 “불가” 는 해당 칸의 학과로 전입할 수 없음을 말함 ※ 다전공 과정 선택이 불가한 간호학과는 전공학점(전공핵심+전공심화)이 70학점이나, 간호학과의 전공기초 ·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이 99학점이므로 99학점으로 표기함 ※ 졸업학점은 ① 교양학점 ② ‘주전공’ 만 선택시 학점 또는 ‘주전공+다전공’ 선택시 학점 ③ 부전공 학점 합산 ※ 졸업요건으로 ① 교양학점 ② ‘주전공’ 만 선택시 학점 또는 ‘주전공+다전공’ 선택시 학점 이수해야함 ※ 편입생은 전공 65학점 이상(전공기초 · 전공필수 요건 충족) ※ 편입생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하는 다전공 과정을 신청할 수 없고, 전공심화 과정만 신청 가능																		

□ 교양 교과목의 기초교양 및 핵심교양의 영역별 이수기준

● 2014학년도 입학생 적용

이수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기초교양 (필수)	채플	1	
	미션채플	1	
	기독교의 이해	2	
	English Reading & Listening(1)	2	
	English Reading & Listening(2)	2	
	English Reading & Listening(3)	2	
	English Reading & Listening(4)	2	
	동기유발	1	
기초교양 소계		13	
핵심교양 (선택)	인간 · 문화	2	- 영역별 최소 2학점 - 핵심교양 교과목 최소 16학점 이수
	사회 · 역사	2	
	자연 · 과학	2	
	예 · 체능	2	
	※ 자율이수	8	
핵심교양 소계		16	
합계		29	

● 2015학년도 ~ 2017학년도 입학생 적용

이수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기초교양 (필수)	채플	1	
	미션채플	1	
	기독교의 이해	2	
	English Reading & Listening(1)	2	
	English Reading & Listening(2)	2	
	중국어회화(1)	2	
	중국어회화(2)	2	
	동기유발	1	
기초교양 소계		13	
핵심교양 (선택)	인간 · 문화	2	- 영역별 최소 2학점 - 핵심교양 교과목 최소 16학점 이수
	사회 · 역사	2	
	자연 · 과학	2	
	예 · 체능	2	
	※ 자율이수	8	
핵심교양 소계		16	
합계		29	

● 2018학년도 입학생 적용

이수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기초교양 (필수)	채플	1	
	미션채플	1	
	기독교의 이해	2	
	사회봉사실천	1	
	대학영어	2	
	대학중국어	2	
	사고와 표현(1)	2	
	사고와 표현(2)	2	
	사제동행세미나(1)	1	
	사제동행세미나(2)	1	
기초교양 소계		15	
핵심교양 (선택)	문학과 예술	- 2개 영역, 각 2학점 이상 취득	
	언어와 문화		
	역사와 철학		
	사회와 정치	- 1개 영역 선택 2학점 이상 취득	
	경제와 경영		
	과학과 기술		
	체육과 생활	2	
	창의와 융합	2	
	※ 자율이수	6	
핵심교양 소계		18	
합계		33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이수구분	핵심역량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기초교양 (필수)	봉사	채플		1	
		미션채플		1	
		기독교의 이해		2	
		사회봉사실천		1	
	소통	대학영어		2	
		대학중국어		2	
	창의	사고와 표현(1)		2	
		사고와 표현(2)		2	
	도전	사제동행세미나(1)		1	
		사제동행세미나(2)		1	
기초교양 소계				15	
이수구분	핵심역량	영역		이수학점	
		대영역	소영역		
핵심교양 (선택)	봉사	인간과 사회	역사와 철학	2	
			사회와 정치	2	
	소통	세계와 문화	언어와 문화	2	
			문학과 예술	2	
	창의	통섭과 실용	창의와 융합	2	
			과학과 기술	2	
	도전	비전과 자기계발	경제와 경영	2	
			체육과 생활	2	
	※ 자율이수			2	
	핵심교양 소계				18
합계				33	

● 편입생(외국인 유학생 포함)의 교양 및 전공 교과목 이수 기준

구분	교양 교과목 이수기준	전공 교과목 이수기준
편입생	기초교양 · 핵심교양 구분 없이 전적대학 학점을 포함하여 교양 29학점 이상	전공 65학점 이상 (전공기초, 전공필수 요건 충족)

※ 편입생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하는 다전공 과정을 신청할 수 없고, 전공심화 과정만 신청 가능
 ※ 편입생의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인 진로세미나(1) · 진로세미나(2)를 졸업 이수조건에서 제외
 ※ 2017학년도 이전 편입생 중 동기유발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2017학년도 이후 편입생 이수기준 따름

학년 수료 기준 및 학사학위 수여

● 학년 수료 기준

- 각 학년별 학기등록 · 학점 취득 시 해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료증명서 발급
- 학년별 수료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다음의 학점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수료증명서 발급 가능

학년	학점기준	
1학년	졸업학점의 1/4 이상	33학점
2학년	졸업학점의 2/4 이상	65학점
3학년	졸업학점의 3/4 이상	98학점
4학년	졸업학점의 4/4 이상	※ 130학점

- ※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 : 4학년 수료기준은 전공 최소학점 65학점과 교양 최소학점 29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함
-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 4학년 수료기준은 전공 최소학점 70학점과 교양 최소학점 33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함

● 학사학위 수여

-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8학기)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외국어 졸업인증제 포함)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
- 학사학위 수여 기준과 수료증명서 발급 가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학사학위 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 + 졸업논문(학과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 실기발표 ·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대체 가능) 심사에 합격한 학생
수료증명서 발급가능	졸업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생

제2절 졸업인증제

학과 졸업논문 인증제

- 2014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에 관한 학과별 인증기준에 따라 졸업논문 등 (해당학과에 졸업요건에 따른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기발표)을 인증을 받아야 졸업 가능

학과(부)별 졸업논문 등의 인증기준

대학	학과(부)		인증기준					비고
			졸업 논문	졸업 종합 시험	졸업 작품	실기 발표	실험 실습 보고	
사회과학 대학	공공행정학과			○				
	유아교육과				○			포트폴리오
	사회복지학과			○				
	미디어언론학과				○			포트폴리오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국제어학과			○				
바이오 생태보건 대학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				
		외식조리전공		○				
		바이오식품산업전공		○				
	임상병리학과			○				
	방사선학과			○				
	치기공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치위생학과		○					
	뷰티헬스 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	○		
		안경광학전공		○				
간호대학	간호학과			○				
과학기술 융합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I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컴퓨터공학전공	○		○			항목 중 1개 통과
	섬유소재공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	○			트랙별 기준 따름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					
디자인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전공				○		
		태권도교육융합전공		○			○	
		모델콘텐츠전공			○	○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			
		패션디자인전공			○			
		공간디자인전공			○			
※ 졸업인증기준이 두가지 이상 표기된 경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학과에서 확인)								

외국어 졸업인증제

● 학과(부)별 외국어 졸업인증 기준

- 외국어 졸업인증제(학과별 토익 등의 어학성적)는 2017학년도에 신입생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신입생은 해당되지 않음
- 「졸업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편입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졸업에 관한 규정」 제21조(적용대상)

- 편입생, 계약학과 신·편입생, 장애학생, 외국인학생,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

● 외국어 졸업인증제 참고사항

- 학과별 외국어 졸업인증 자격에 따른 공인 외국어성적에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졸업에 관한 규정」 제22조(인증요건)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외국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어 졸업인증 방법

- 학과별 외국어 졸업인증 자격에 따른 공인 외국어성적에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졸업에 관한 규정」 제22조(인증요건)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외국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졸업예정일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본교 국제어학센터 시행 모의 토의시험 성적 제출
-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때
- 2017학년도 입학생(아래 항목 교차인증 불가)
 - ① English Reading & Listening(1)과 English Reading & Listening(2)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B학점 이상 취득
 - ② 중국어회화(1), 중국어회화(2)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B학점 이상 취득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대학영어·대학중국어 교과목 중 하나의 교과목에 대하여 B학점 이상 취득
- 총장이 정한 대학 국제어학센터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프로그램의 이수
- 총장이 정한 대학의 해외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

[illegible]

제3절 조기졸업

허용범위 및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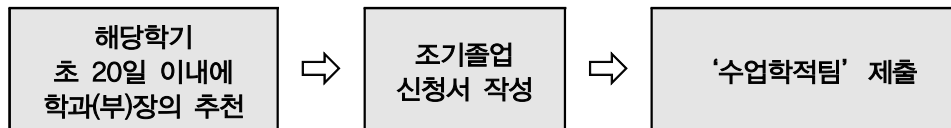
- 허용범위

-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본교에 설치된 전 학과(부)로 하되 각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3%로 제한

- 조기졸업 대상자 자격

- 졸업이수학점 충족 : 130학점
- 외국어 졸업인증 기준 충족
-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 기준 : 4.30 이상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학사경고 기록이 없는 학생
 - ※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 학생은 제외 대상

조기졸업 신청방법



자격상실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휴학하는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평균이 4.30 미만인 학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졸업을 포기하는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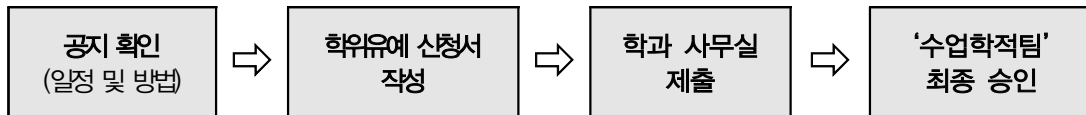
제4절 학위유예

- 학위유예 : 정규학기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하나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학사학위 취득유예” 라 하고, 이하 “학위유예” 라고 하며, 이전의 “졸업유예” 가 “학위유예” 로 명칭이 변경됨

학위유예기간 및 신청자격

- 학위유예기간 : 학기단위로 재학연한(16학기) 이내에 6회(3년)까지 학위유예 가능
 - ※ 학위유예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졸업 처리됨
- 신청자격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① 8학기 이상 이수
 - ② 졸업학점 이수
 - ③ 졸업논문 등 졸업 인증
- 신청시기 : 학위수여식 이전 공지된 기간 내에 신청

학위유예 절차



※ 학위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며, 학위유예 신청은 신청 후 취소 불가

학위유예생의 수강신청에 관한 학사관리

- 학위유예 승인 학생은 학위유예기간동안 수강신청 의무 없음
- 단,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금은 신청 학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함

신청학점	수업료 기준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납부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납부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납부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위유예를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시기에 졸업 처리

조 기 졸 업 · 학 위 유 예 신 청 서

신 청 구 분		☐ 조기졸업		☐ 학위유예			
신 청 정 보	성 명			소 속			
	학 번			연 락 처			
졸 업 요 건	이 수 학 기	학기		총취득학점	학점		
	졸업논문 등	별도 기재 요하지 않음 (학과가 시스템에서 졸업논문 등 (Y, N)등록)					
	외국어인증	인증종류 (TOEIC 등)	성적	취득일자	시행기관		
학 위 유 예	신 청 사 유						
	신 청 차 수	최초(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신 청 학 기	학년도		학기			
첨 부 서 류	1. 성적증명서 1부 2. 외국어인증 관련 성적표 사본 1부 ※ 첨부서류는 조기졸업 신청 및 학위유예(최초) 신청시 제출함						

위와 같이 (☐ 조기졸업 | ☐ 학위유예)를 신청합니다.

20 . . .

학 생 (서명)

학 과 (부)장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제 4 장

수업



제4장 수 업

제1절 수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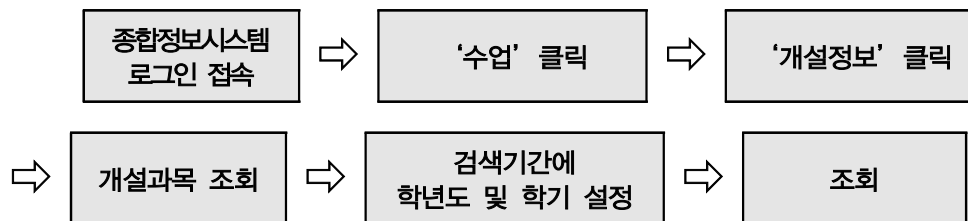
- 수강신청 :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표와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수업을 신청하는 것

수강신청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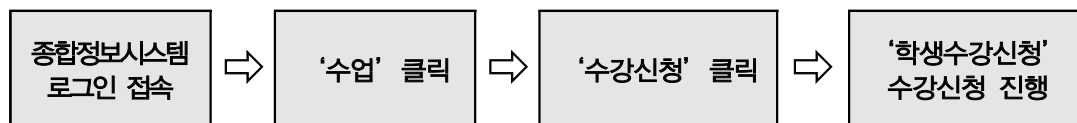
- 1학기 개강 전 : 당해연도 1월 또는 2월 중
- 2학기 개강 전 : 당해연도 7월 또는 8월 중

수강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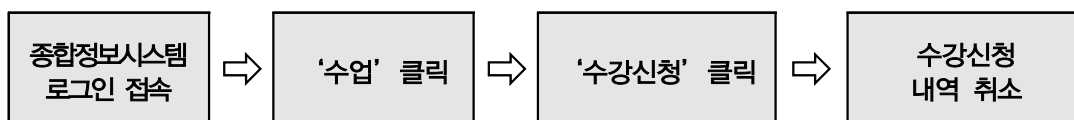
- 개설과목 조회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취소



※ 수강신청 취소 후 취소내역을 반드시 확인

수강신청 학점 제한

- 매 학기 재수강을 포함하여, 최소 15학점 이상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야함
 - ※ 6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은 최소 9학점 이상(재수강 학점 제외) 수강신청 가능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면서 F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강을 포함하여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1.5 미만)를 받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18학점 이하로 제한
 - ※ 인재개발처의 학업·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수강신청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강신청 유의사항

- 학생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인원이 초과된 경우 당해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
- 동일 교과목을 중복 신청하였거나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을 신청한 경우 학점 인정 불가
-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폐강이 될 경우, 폐강강좌를 수강신청 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변경 요망
- 수강신청에 대한 내용은 학생이 책임지게 되므로 수강신청 및 변경·취소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
- 수강신청 변경 시 변경 교과목에 대하여 1주차 미출석 시에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변경 또는 신규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교과목 수업에 필히 출석을 해야 함(폐강 교과목도 동일)
-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변경 수강신청 한 교과목에 대한 1주차 출석인정은 변경 전 교과목 출석확인서를 변경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수강신청 전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숙지

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매 학기 개시 후 일주일 내로 지정
- 수강신청 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이전에 수강신청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수강신청 포기

- 수강과목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교과목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포기 후 수강학점은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이상이어야 함
 - ※ 최저 이수학점 : 6학기까지 15학점 이상, 7학기 이후 9학점 이상
- 수강신청 포기기간은 개강 후 4주차에만 가능
- 수강신청 포기 방법은 교내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수강신청 → 수강포기」 선택하고, 수강신청 내역서에 포기하려는 과목을 「포기」 선택함
 - ※ 수강신청을 포기한 과목은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

재수강 신청

- 이미 수강한 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
 - ※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학교에서 지정하는 대체 교과목으로 재수강 신청 가능
- 재수강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재수강으로 취득한 동일 교과목은 최대 B+ 성적을 취득할 수 있고,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최종으로 취득한 성적을 평점평균에 포함하여 계산
-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재수강(R) 표시

분반 · 폐강 기준

- 교과목의 반(Class)은 이론과목 40명, 실습과목 30명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반(Class)이 이론과목 50명 이상, 실습과목 40명 이상인 경우 분반 가능
- 분반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교과목 특성 및 실습실 여건 등의 사유로 분반이 불가피한 경우 분반 가능
-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폐강함
 - ①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를 위하여 15명 미만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전공 교과목의 경우 해당학과, 전공 학년의 재학생이 10명 이내인 경우
 - ③ 교과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함

제2절 계절학기

개설기간 및 신청기간

- 여름계절학기 : 6월 ~ 7월 (신청기간 : 6월 중)
- 겨울계절학기 : 12월 ~ 1월 (신청기간 : 12월 중)

계절학기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생 중 학점취득을 위한 추가 신청 학생
- 휴학생은 계절학기 신청 불가

계절학기 수강신청

- 학기당 수강신청은 8학점 이내로 가능
- 계절학기 수강신청인원이 15명 이상 등록하였을 경우 과목 개설 가능
- 정해진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당해 학기 학사공지 참조)
- 수강신청한 학생은 계절학기 개강 이후에 취소 불가(개강 이전에 수강취소 시 계절학기 취소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방문하여 제출)

성적 및 학점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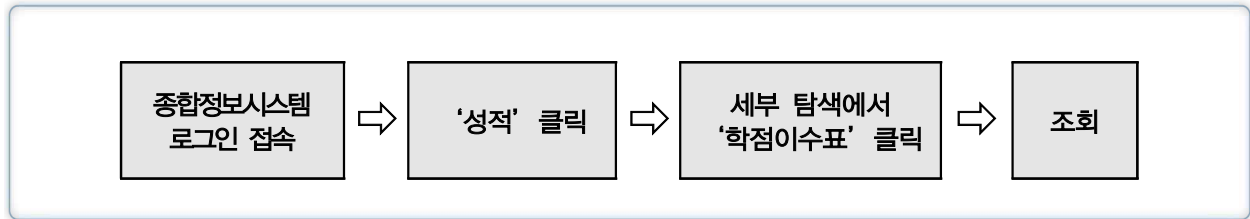
-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기준에 필요한 학점 및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산하고, 장학생 선발에는 제외
-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하며, 성적은 출석 20%, 시험성적 80%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

계절학기 수강료

- 계절학기 수강료
-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
 - 전공 교과목 = (수강신청학점/20) × 해당학과 정규학기 수업료
 - 교양 교과목 = 학점 당 70,000원 (2학점일 경우 140,000원)
-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계절학기 개강 2주 전에 개설 예정 교과목 목록과 함께 공고
-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료를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료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

제3절 학점이수표

학점이수표 조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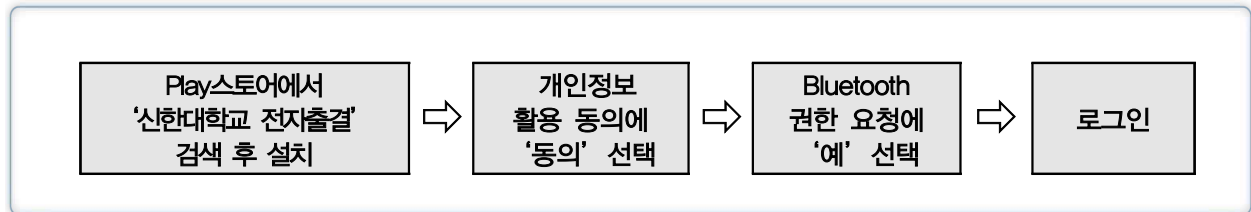
학점이수표 기타사항

- 특례편입 시 영어회화(1),(2)를 English Reading&Listening 한 과목으로 대체한 경우 학점이수표 상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식되어 1학점 차감되어 표기되지만 실제 이수학점에서는 제외되지 않음
※ 기초교양,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로 대체한 과목을 다시 수강한 경우도 동일
- 특례편입 직후 휴학 등으로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학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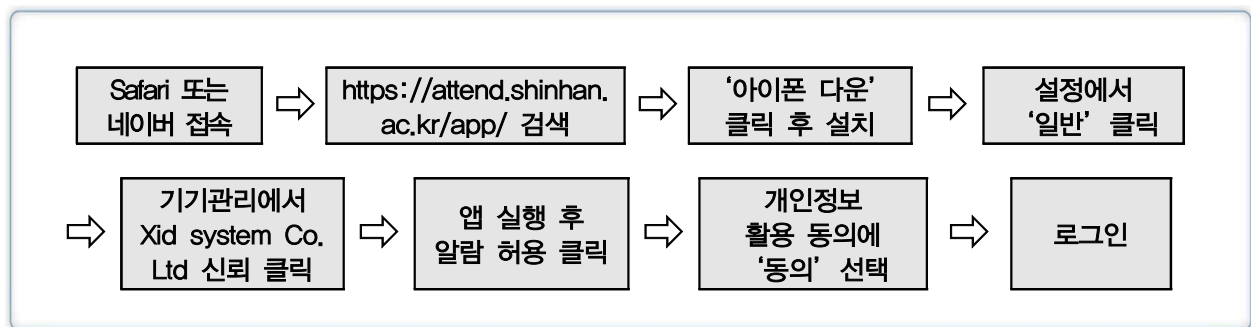
제4절 전자 출결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설정 방법

● 안드로이드



● iOS : 아이폰



요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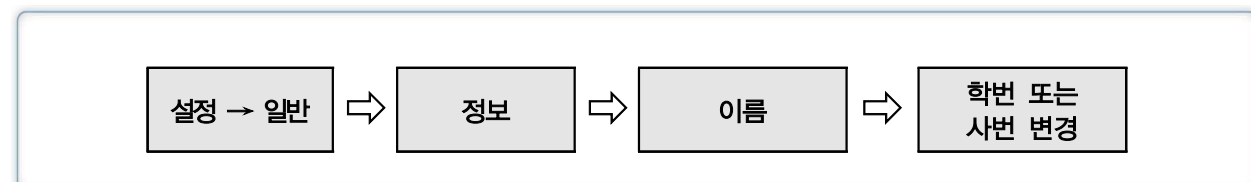
- 전자 출결 앱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설치 옵션 시 블루투스 항시 켜기 옵션을 선택하여야 함
- 자동출석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출결사항이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출결처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함

출석 확인 방법

- [수업주차]를 선택한 후, [출석체크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PUSH를 발송하게 되며, 30초 동안 교수자의 폰과 학생 폰이 자동으로 출결을 CHECK하게 됨

출석 알림 상태가 비정상일 경우 : 아이폰

- iOS 경고창이 떴을 때 설정 : iOS가 12.1 이상인 경우 기기 이름을 반드시 학번 또는 사번 변경



제 5 장

성적



제5장 성 적

제1절 성적평가

시험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매 학기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평가
- 추가시험 : 질병 및 신체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진단서, 신체검사통지서 등)를 학과에 제출하여 추가 시험에 응시 가능

평가

- 교과목별로 시험성적·출석상황·과제물 평가·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수업일수 3/4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출석점수는 전자출결에 의해 자동으로 점수 환산

배정비율		
출석 20%	중간/기말고사 및 평소 학업성적 80%	계 100%

- 4번 이상 결석 시에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F급)
 - 교과목 특성에 따라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현장실습 등)
- ※ 관련근거 : 신한대학교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출석과 성적)

유고결석 출석인정

- 결석한 학생이 표의 사유에 의한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유고결석으로 인정

결석사유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검사	해당일 (지방일 경우 3일)	신체검사 통지서
본인의 결혼	7일	청첩장
본인의 질병	14일 이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서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	해당기간	출석대체인정서

성적 등급

● 성적등급표

성적등급	성적평점	백분위 점수
A+	4.5	95-100
A0	4.0	90-94
B+	3.5	85-89
B0	3.0	80-84
C+	2.5	75-79
C0	2.0	70-74
D+	1.5	65-69
D0	1.0	60-64
F	0	0-59
P	Pass	-
N	Non-Pass	-

● 평점평균 산출방식

$$\frac{\text{각(교과목 학점} \times \text{교과목 평점)의 합}}{\text{총 수강신청 학점}}$$

- 예시 : 평점평균 = (3×4.5 + 3×3.5 + 3×4.5 + 2×4.5 + 2×3.5 + 2×2.5) / 15 = 3.90 / 4.50

구분	교과목명	학점	성적등급	성적평점
전선	교과목(가)	3	A+	4.5
전선	교과목(나)	3	B+	3.5
전선	교과목(다)	3	A+	4.5
기초교양	교과목(라)	2	A+	4.5
핵심교양	교과목(마)	2	B+	3.5
핵심교양	교과목(바)	2	C+	2.5
취득학점		15	평점평균	3.90

● 성적 등급 및 평가

-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F를 제외한 각 등급별로 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로 구분하며, 평점 및 백분위 점수는 “성적등급표”와 같음
- 교과목의 특성상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 취득 시 등급은 “P”로 표기하고, 미 취득 시 등급은 “F”로 표기

● 평점의 계산

- 성적 평점평균 산출 :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절사
- 성적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성적 순위 : 평점 합계, 학점 합계, 성적취득 과목 수

● 성적 등급의 환산

- 성적 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등급표”에 의한 환산

● 성적 등급분포 비율 및 평가방법

● 성적의 등급분포 비율

등급	평점평균	상대평가 등급분포		절대평가	백분위 점수
		상대평가(1)	상대평가(2)		
A 이상	4.0 이상	30% 이하	40% 이하	제한사항 없음	90 이상
B 이상	3.0 이상	80% 이하 (A+B누적)	80% 이하 (A+B누적)		80 이상
C 이상	2.0 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70 이상
D 이상	1.0 이상				60 이상
F	—				59 이하

※ 교과목 범주가 이론일 경우 상대평가(1)을 실습(교내실습)의 경우 상대평가(2)의 등급분포를 원칙

- 성적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
- 등급분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① 수강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 ② 성적을 P/N(합격/불합격) 산출하는 교과목 및 현장실습교과목
 - ③ 교원자격증 관련학과의 교과목
 - ④ 외국인 유학생(해당 수강교과목의 등급분포 비율인원에서 제외)
 - ⑤ 그 밖의 성적산출 분포가 필요하지 아니한 교과목

● 평점평균의 계산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별 학점과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산출
- 성적의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함
 - ① 백분위점수 합이 높은 학생
 - ②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③ 3학점이상 백분위점수 합이 높은 학생
 - ④ 2학점이하 백분위점수 합이 높은 학생
 - ⑤ 나이가 어린 학생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과(부)별, 전공별, 트랙별 성적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장학금 지급 등에 있어서 성적순위가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유학생별로 산출할 수 있음

● 추가시험평가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기간에 응하지 못할 때는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고, 조기취업생의 경우도 이에 해당

성적처리 유의사항

● 성적취소

- 시험부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 매학기 수업시간 1/4이상 결석한 학생이 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

● 학기 중 휴학생의 성적 처리

- 학기 중 휴학자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성적 처리

종류		성적처리
일반휴학		학기 성적 인정 불가
군휴학	개강일 3/4 이전 입대	학기 성적 인정 불가
	개강일 3/4 이후 ~ 기말고사 전 입대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취득과목이 60점 이상에 한하여 인정

※ 단, 기말고사 종료 후 입대자는 반드시 기말고사를 응시해야 함

성적 공지

- 성적공지 : 학기말고사 시험 최종일부터 1주 이내
- 공지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 공지기간 : 별도로 정함
- 정정기간 : 성적공지 기간 내
- 성적가정통신문 :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성적표 통지
- 성적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및 성적증명서 발급을 통한 확인

제2절 성적정정

- 성적정정 : 교과목 성적에 대하여 착오 또는 기재누락 등의 사유로 제출된 성적을 정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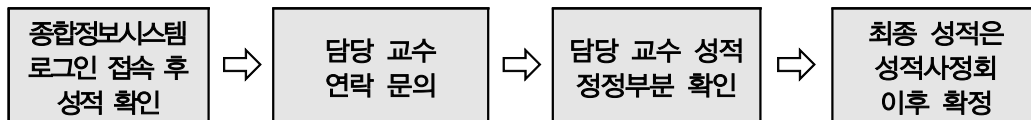
성적정정 관련 규정

- 신한대학교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성적처리 및 확정)
 -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여 확정
 - 성적이 확정된 후 성적을 정정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정가능
 - 기재착오, 성적평가물 누락 등의 사유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 가능

성적정정 기간

- 성적처리 기간 동안 사전에 공지된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내

성적정정 절차



※ 단, 수업평가를 완료하여야 성적 확인 가능

제3절 학사경고

학사경고 기준

- 학사경고 기준학점 : 해당학기의 평점평균 1.5 미만인 경우 (성적사정회 이후)
- 등록 후 미수강 신청의 경우
 - 3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되고 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사전에 인재개발처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제적 제외 가능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학점을 18학점 이하(재수강 포함)로 제한
 - ※ 단, 학위유예생과 인재개발처의 총장이 정한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예외



제 6 장

교직



제6장 교 직

제1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 「유아교육법」 제22조
- 「교원자격검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입학년도에 따른 학과별 합격 기준

● 유아교육과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생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 22학점(11과목) 이상 - 교직이론 :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 4학점(2과목) 이상 - 교직실습 :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11과목) 이상 -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6학점(3과목) 이상 - 교직실습 : 4학점(2과목)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간호학과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생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직	* 22학점(11과목) 이상 - 교직이론 :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 4학점(2과목) 이상 - 교직실습 :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11과목) 이상 -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6학점(3과목) 이상 - 교직실습 : 4학점(2과목)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단,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간호사 면허증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전공 교과목_기본이수 교과목

자격종별	기본이수 교과목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학과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 확인하여 이수할 것
보건교사(2급)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학과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 확인하여 이수할 것 (교과목 분리운영)

전공 교과목_교과교육 교과목

자격종별	교과교육 교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 등

교직 교과목

– 2013~2016학년도 입학생

자격종별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유치원 정교사(2급)	• 12학점(6과목이상)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 교육과정 ④ 교육평가	• 6학점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 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 4학점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보건교사(2급)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 교육심리 ⑦ 교육사회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 생활지도 및 상담 ⑩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자격종별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유치원 정교사(2급)	• 12학점(6과목이상)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 교육과정 ④ 교육평가	• 6학점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 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4학점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보건교사(2급)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 교육심리 ⑦ 교육사회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 생활지도 및 상담 ⑩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제2절 교육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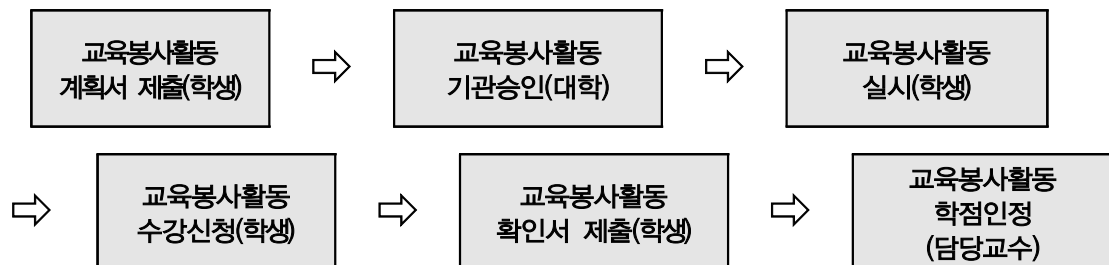
● 교육봉사활동

- ①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
- ②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
 -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 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 불가(예시 : 노인 문예교실)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
 - ※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수행절차



- ※ 단,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제3절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증 발급절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서류 제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성적증명서	간호사면허증 사본(보건교사)

- ①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된 서류와 학적사항 확인
 - ② 국가기술자격증의 내용 확인 및 원본대조(해당자에 한함)
 - ③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 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정해야함
 -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로 하고, 졸업 후 검정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은 실제 발급일로 함
 - 학위유예 신청자는 교원자격증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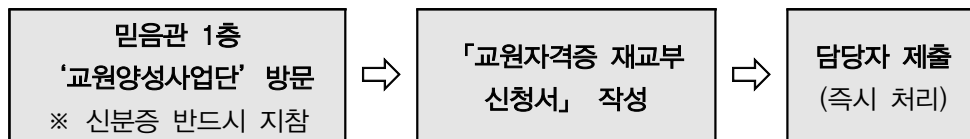
● 교원자격증 발급일

- 유아교육과 : 졸업일
- 간호학과 : 간호사 면허증 제출 후 실제 발급일

교원자격증 재발급

- 교원자격증 재발급 조건 :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손상되었을 경우 신청 가능

● 교원자격증 재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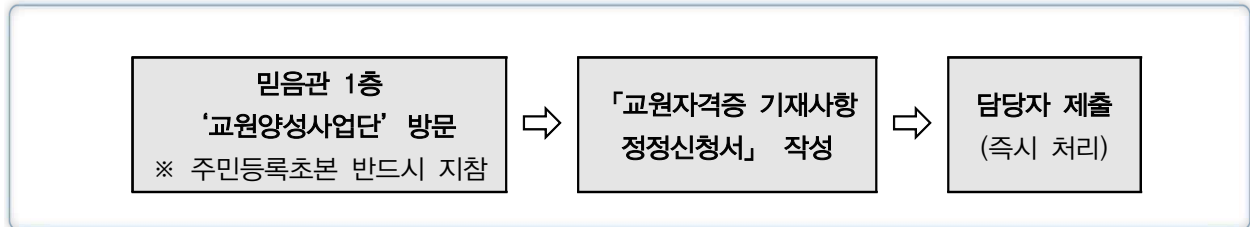


-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 교원자격증 재발급시 수수료 발생
- 방문신청 : 신한대학교(의정부캠퍼스) 민음관 1층 교원양성사업단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수정 등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여,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교원자격증 정정 절차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교원자격증 재발급시 수수료 없음
- 방문신청 : 신한대학교(의정부캠퍼스) 민음관 1층 교원양성사업단



제 7 장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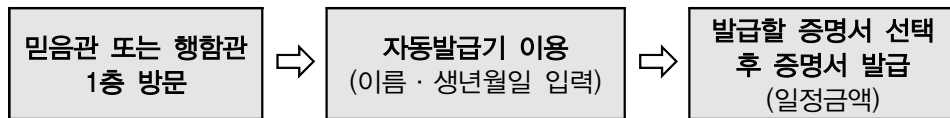
제7장 증명서 발급

제1절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종류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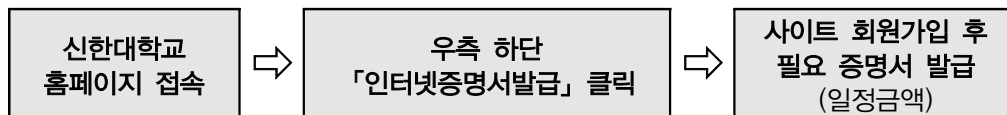
● 교내 무인증명발급기 안내 및 발급 방법

- 무인증명발급기 배치 위치
 - ① 의정부캠퍼스 : 민음관 1층, 행함관 1층 배치
 - ② 동두천캠퍼스 : 본관 1층 배치
- 발급 가능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소요시간 : 즉시 발급



● 인터넷 증명발급 안내 및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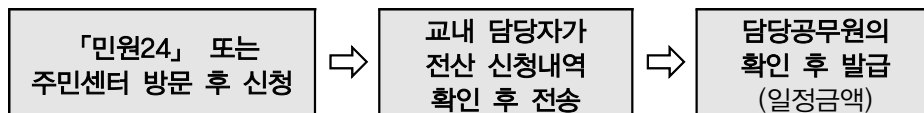
- 발급 가능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 1990년 이전 졸업생의 경우 인터넷 증명발급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불가
- 소요시간 : 즉시 발급



※ 단, 등록금납입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가능

● 공공기관 팩스민원 안내 및 발급 방법

- 발급 가능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소요시간 : 신청 후 3시간 이내 신청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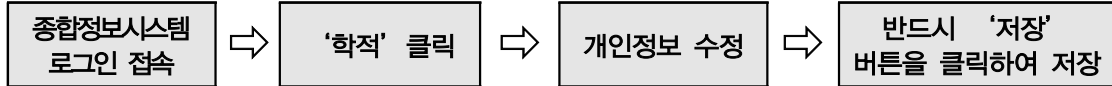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
성적증명서	○	○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 - "F" 성적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재수강한 성적을 표기 - "F" 성적을 재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F" 성적을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
졸업증명서	○	○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증서를 수여받은 학생
졸업예정증명서	○	○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7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수료증명서	○	○	각 과 학년 수료생
재학증명서	○	○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까지의 등록을 마친 학생
휴학증명서	○	○	휴학생으로서 현재 휴학 중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학생
제적증명서	○	○	본교에 입학하여 제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등록금납입증명서	○	X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학적부	○	X	본교의 적을 둔 자의 신상에 관한 기록
장학금수혜내역 증명서	○	X	장학금을 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기록
※ 기타 증명서 : 규정에 없는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는 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원서 2부를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1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수료예정증명서 :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지 않으며, 수업학적팀 사무실을 방문 신청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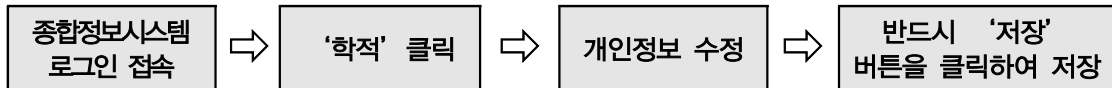
제2절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개인정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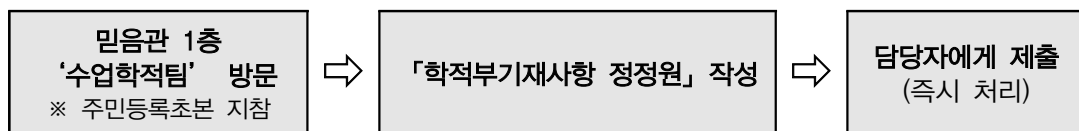
- 주소 · 연락처 · 계좌번호 · 이메일 · 보호자 인적사항 등 변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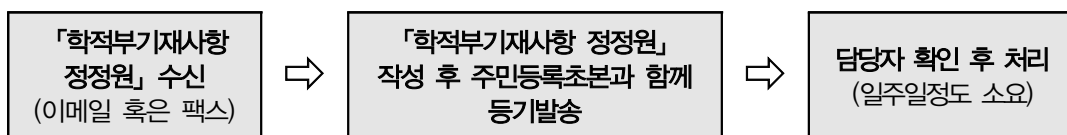
- 영문이름 등록 · 수정의 경우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 수정의 경우
- 학교 방문신청 : '수업학적팀' 방문신청



- 등기신청



부록



부 록

신한대학교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사회과학대학	031-870-3631
글로벌비즈니스대학	031-870-3861
바이오생태보건대학	031-870-3801
간호대학	031-870-1781
과학기술융합대학	031-870-2981
디자인예술대학	031-870-3871

수업학적팀 담당업무 및 연락처

담당 업무	연락처
교육과정, 학사일정,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031-870-3223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출 · 결석, 수업계획서	031-870-3224
시험, 성적평가, 성적, 학점, 졸업학위, 교원자격증	031-870-3225
학적, 휴 · 복학, 전과, 재입학, 부전공 · 복수전공 · 다전공, 전공배정 및 트랙배정, 현장실습	031-870-3226
계절학기, 수업평가, 소모품 관리, 증명서 발급, 교직과정	031-870-3227

연계 부서 연락처

부서명(담당 업무)	연락처
학생지원팀(장학금 관련)	031-870-3353
재무회계팀(등록금 관련)	031-870-3385
교원양성사업단(교원자격증 재발급 관련)	031-870-3228

학과(부) 사무실 연락처 및 위치

학과(부)	연락처	위치
공공행정학과	031-870-3460	에벤에셀관 2층 (2110호)
유아교육학과	031-870-3520	은혜관 1층 (1050호)
사회복지학과	031-870-3610	에벤에셀관 2층 (2110호)
미디어언론학과	031-870-3760	은혜관 1층 (1050호)
글로벌통상경영학과	031-870-3540	에벤에셀관 6층 (6220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031-870-3580	에벤에셀관 6층 (6220호)
국제어학과 [2캠퍼스]	031-870-1700	샤론관 2층 (2050호)
식품조리과학부	031-870-3500	행함관 5층 (5120호)
식품영양학전공	031-870-3510	행함관 5층 (5120호)
외식조리전공	031-870-3508	행함관 5층 (5120호)
바이오식품산업전공	031-870-3854	행함관 5층 (5120호)
임상병리학과	031-870-3700	기도관 4층 (4050호)
방사선학과	031-870-3410	은혜관 4층 (4250호)
치기공학과	031-870-3420	기도관 4층 (4120호)
치위생학과	031-870-3450	에벤에셀관 3층 (3300호)
뷰티헬스전공	031-870-3440	에벤에셀관 4층 (4290호)
안경광학전공	031-870-3430	은혜관 4층 (4250호)
간호학과 [2캠퍼스]	031-870-1710	베데스다관 2층 (2340호)
에너지환경공학과 [2캠퍼스]	031-870-1720	브니엘관 1층 (1070호)
전자공학전공 [2캠퍼스]	031-870-1730	본관 2층 (2040호)
컴퓨터공학전공 [2캠퍼스]	031-870-1740	본관 2층 (2040호)
섬유소재공학과 [2캠퍼스]	031-870-1760	브니엘관 1층 (1070호)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031-870-3680	기도관 1층 (1040호)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031-870-3890	은혜관 4층 (4080호)
공연예술학과(연기)	031-870-3780	말씀관 1층 (1110호)
공연예술학과(K-POP)	031-870-3788	은혜관 지하1층 (B1080호)
태권도교육융합전공	031-870-3066	은혜관 1층 (1160호)
모델콘텐츠전공	031-870-3880	은혜관 지하1층 (B1080호)
디자인학부	031-870-3650	기도관 2층 (2070호)
산업디자인전공	031-870-3660	기도관 2층 (2070호)
패션디자인전공	031-870-3677	에벤에셀관 4층 (4100호)
공간디자인전공	031-870-3658	에벤에셀관 4층 (4100호)
교양교육원	031-870-3770	진리관 1층 (1070호)

캠퍼스별 건물 안내

의정부캠퍼스



- ①정문 ②지하철입구 ③에벤에셀관(Ebenezer) ④벨렐관(Bethel) ⑤믿음관(Sola Fide) ⑥은혜관(Sola Gratia) ⑦진리관(Sola Veritas)
 ⑧말씀관(Sola Scriptura) ⑨행함관(Sola Opera) ⑩기도관(Sola Oratio) ⑪변혁관(Renovare) ⑫빛과소금관(Sal, et lux) ⑬사온관(Zion)
 ⑭모리아관(Moriah) ⑮광야관(Midbar) ⑯카르멜2관(Carmel2) ⑰대운동장 ⑱언약의 교회 ⑲후문 ⑳북문

동두천캠퍼스



- ①정문 ②본관 ③별관 ④로뎀관 ⑤사론관 ⑥브니엘관 ⑦공연장 ⑧베데스다관 ⑨대운동장 ⑩버스승강장 ⑪후문

